

1999. 7.

##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-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-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산업건설위원회

#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	'99. 6. 24	'99. 6. 24	'99. 6. 29	'99. 6. 29	산림 녹지과
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자역 경제과
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교통과
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"	"	"	"	"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○ 공원사용허가시 불합리한 사항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「충주시공원사용조례」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2) 주요골자

- 지금까지 운동회, 집회등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운동이나 기타활동을 자유롭게 하도록 함.(제2조)
- 공원사용기간 만료일전에 사용폐지 신고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폐지(제9조)

## 나.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조례·규칙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충주시공설시장 상인단체 구성 및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이루고자 함.

### 2) 주요골자

-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제5조(상인단체의 구성), 제6조(위반단체의 조치), 제7조(단체의 감독)를 폐지

## 다.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주차장 설치 용자지원 대상기준중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하고 조례중 법령과 상치되는 내용을 정비하여
-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임.

### 2) 주요골자

- 주차장 설치 용자지원 대상에 타인의 토지를 임대받아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도 포함
- 주차대수 25대 이상 규모에게만 부여하는 용자대상 조건을 폐지
-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사본을 노외주차장 통보서 사본으로 개정

## 라.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를 일치시키고
- 비효율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임.

### 2) 주요골자

- 법개정으로 도심지역, 외곽지역 구분을 없앰.
- 부담금 부과 기준을 도심지역(1제곱미터당 350원), 외곽지역(1제곱미터당 250원) 구분없이 균일하게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일치 시킴.
-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구분을 세분화(17종→34종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1. 14일 조례 제88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 중
- 1998. 2. 28일 법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
-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 함으로써

-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나.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1. 14일 조례 제60호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던중
- 1998. 2. 28일 법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
-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이 목적이므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# 다.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종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1. 14일 조례 제67호로 공포되어 현재까지 2회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던중
- 1998. 2. 28일 법률 제5529호로 행정규제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주차장설치용자지원대상기준중 불필요한 행정규제사항을 폐지함으로써
-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과 본 조례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라.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(중개정)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5. 6. 10일 제228호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까지 시행하는 중
- 1997. 12. 13일 법률 제5453호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과 현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치시키고
- 비효율적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 4. 질의·답변 요지

### 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(중개정)조례안

- 없음.

### 나.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(중개정)조례안

#### [질의]

- 행정규제에 따른 준칙안이 내려왔는지?

☞ 답 변 : 행정규제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일괄 폐지등 개정하는 것임.

다.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○ 없음.

라.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[질의]

○ 교통유발부담 경감 대상이 영 제9조에서 제36조로 변경 되었는지?

☞ 답 변 :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부과하며 제38조에 의거 감면해 주는 것임.

[질의]

○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서 50/100으로 경감을 더해 주는 이유는?

☞ 답 변 : 제35조(부담금부과기준) 4항에 의거 조정하는 것임.

## **5. 심사결과**

- 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나.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다.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: 원안가결
- 라.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(별지)

## **6. 붙 임**

- 가. 충주시공원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나. 충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다.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라.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
[별지]

□조례명 : 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

충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 
수정한다.

제5조(부담금의 경감) 제1항제3호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10”으로 한다.

<수정안대비표>

개정안	수정안
제5조(부담금의 경감) ①(생략)  3. 경감비율 : 제1항 제2호의 내용으로 ---- 교통량을 <u>100분의 20</u> 이상 감축한 자에 계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	제5조(부담금의 경감) ①(생략)  3. 경감비율 : 제1항 제2호의 내용으로 ---- 교통량을 <u>100분의 10</u> 이상 감축한 자에 계는 교통유발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